

 <b>국토교통부</b>		<b>보도참고자료</b>	
		배포일시	2018. 3. 30.(금) / 총3매(본문2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	담 당 자	• 과장 박병석, 사무관 박군성, 주무관 허동혁 • ☎ (044) 201-3544, 3543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## 「기계설비법」 제정안, 국회 통과

### - 국내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,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 마련 등 -

- 「기계설비법」 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.
  - 이로써,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,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·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.(법 시행일 : 공포 후 2년부터)
  - 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·난방, 환기 및 각종 에너지 설비의 설계, 시공 등을 통하여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나,
  - 지금까지는 토목·건축 등의 부대분야로 인식되어져 그 산업기반이 매우 열악하며, 관련업체 또한 대 내·외적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왔다.
- 특히, 최근 안전이나 건강,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, 냉·난방, 위생 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,
  -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는 등 기계설비산업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나, 이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제도적·기술적 정책은 미흡하였다.

- 따라서, 이번 「기계설비법」 제정으로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기계설비산업의 연구·개발, 전문 인력의 양성,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 지원과 기반을 구축하여 기계설비 산업이 4차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는 한편,
  -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,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,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이번 제정안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으로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박균성 사무관(☎ 044-201-354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**□ 기계설비법 제정안 주요 내용****①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**

-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해 5년마다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
-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마련

**②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구축**

- 공공기관, 대학 및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·개발 사업 실시
-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
-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

**③ 기계설비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**

-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해 기계설비 기술기준 고시
-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실시
-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고시
-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제 도입

**□ 기계설비 산업 현황**

- 업체수 1만여개, 종사자수 43만명, 매출액 약 30조원(전체 건축공사 금액의 15~21% 차지)
- 건축물의 기계설비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소비량 : 건축물에너지 소비량의 71% 차지(약 25조원)
  - \* 기계설비 : 건축물,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·기구·배관 및 그 밖의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냉·난방설비, 위생설비, 공기조화설비, 환기설비, 급배수·급탕설비, 플랜트설비, 가스설비, 자동제어설비, 냉동·냉장설비 등이 있음